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8년 05월 10일

다산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전**	전** 1974-12-24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5-10
전**	곽** 2013-10-06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5-10
전**	곽** 2011-07-17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5-10
전**	곽** 2008-11-28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5-10